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 고 : 제2014 - 238호  
공포일자 : 2014. 5. 28  
담당부서 : 에너지자원정책과(044-203-5124)  
전문참고 : 산업통상자원부(ww.motie.go.kr)

### 제안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인 지원체제와 재원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에너지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함

### 주요내용

가.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집행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에너지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에너지복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 안내



법 률 : 제12680호  
공포일자 : 2014. 5. 28  
담당부서 : 네트워크기획과(02-2110-2959)  
전문참고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부터 발주자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 고 : 제2014 - 223호  
예고기간 : 2014. 6. 12 ~ 7. 22  
담당부서 : 네트워크기획과(02-2110-2958)  
전문참고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 ▶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 제12680호, '14.5.28 공포)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등 합리적 사유로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준 마련과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지구정리를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공사업 등록기준의 법률 상향입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1조)

- 1) 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현금예치 또는 출자 금액 명시 등 관련 조문 정리

### 나. 공사업 육성시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련(안 제24조의2)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부설연구소, 비영리법인 중 공사업 관련 연구실적 및 인력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토록 규정

### 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 1)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를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공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고,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준 마련(안 제50조의2)

- 1) 기술자의 사망·퇴사 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기간 등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유예

### 마. 기타 법령 정비(안 제27조제4항, 안 제36조제1항)

- 1)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매년 6월 30일)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 공시일 조정(6월 30일 → 7월 31일)
- 2) 민원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사용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를 행정규칙 신청서식과 동일하게 설계도면으로 변경



#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사례

## 1 전기비상주감리원과 소방비상주감리원 겸직가능여부

민간발주현장으로 전기비상주감리와 소방비상주감리를 전기감리와 소방감리 자격이 있는 1인으로 겸직배치할 수 있는지

- 귀하께서는 전기감리와 소방감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동일한 현장에서 전기 비상주감리와 소방 비상주감리를 겸직해서 배치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5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 제4호에 따라 전기감리업의 기술인력(전기감리원)과 소방감리업의 기술인력(소방감리원)은 서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서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상주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일인이 전기 및 소방 감리원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각 감리업의 등록인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전기 비상주감리원은 소방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2. 7. 9)

## 2 감리용역 실적신고시 계산서 제출 여부 진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실적신고시 꼭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첨부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요청

- 귀하께서는 공사감리용역 실적신고시 첨부서류 중 진행중인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지와 제출을 해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PQ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자·감리업자는 PQ평가에 따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감리업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PQ고시 별표1(설계)과 별표2(공사감리)의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별표3(주택건설공사전기감리)의 유사용역실적은 연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별표3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불필요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당초 고시를 제정할 때 별표3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토록 한 것은 연면적과 금액을 병행 평가하기 위함이었음을 양지하시어 진행중인 용역에 대해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첨부가 업체의 실적신고에 불편·개선사항이 있다면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2. 7. 13)



# 전기사업법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사례

## 1 같은 사업장내 설치된 전기사업용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동일회사 소유로 자가용수용설비와 사업용발전설비가 동일구내(설치된 위치 지번은 다름)일 경우, 한전 배전선로와 접속점이 다름에도 하나의 설비로 보고 자가용수용설비 900kW와 사업용발전설비 1500kW를 합산하여 2400kW에 맞도록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2개의 설비로 본다면 개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사업용 발전설비는 소유자 소속기술자로 선임하고, 자가용수용설비(900kW)는 대행회사에 위탁선임이 가능한지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두고 있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설비”라 함은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비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합니다.

- 같은사업장내 전기사업용설비와 전기수용설비(비상발전설비 포함)가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소속은 동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 ① 전기사업용설비와 전기수용설비로 구분하여 각각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
- ② 전기사업용설비와 전기수용설비를 통합하여 각각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

-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1500kW)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기사업자 소속기술인력을 상기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1. 11. 7)

##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a업체, 운영 및 유지보수는 b업체가 할 수 있는지 문의

- 건물내 시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a업체가 또다른 시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b업체에게 시설관리를 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a업체 직원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b업체 직원들과 같은 건물내 전기 시설물 운영이나 유지보수를 공동으로 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의

-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에게 두고 있으며, 같은법 제73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선임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위탁사업체로 재 위탁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관리를 나누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1. 11. 30)